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우리하이플러스채권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

2. 작성기준일 : 2022.05.06

3. 효력발생일 : 2022.05.13

4. 정정사유

- ① 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(6등급→5등급)
-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③ 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
- ④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- ⑤ 정기갱신

<집합투자규약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반 영	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)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 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 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 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추가>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	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)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 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 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 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 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제8조(신탁금의 납입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 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 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 로 신탁업자 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 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 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	제8조(신탁금의 납입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 자신탁금을 금전 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 여야 한다.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 투자신탁금을 금전 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 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 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 눈 금액으로 한다.
자본시장법	제9조(수익권의 분할)	제9조(수익권의 분할)

개정사항 반영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을 발행한다.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.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전자증권법」에 따른 전자등록 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	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전자증권법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·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, 자산배분명세, 취득·처분 등의 결과,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.	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·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, 자산배분명세, 취득·처분 등의 결과,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.
오기정정	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내지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	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내지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오기정정	제23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,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, 6.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	제23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,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, 6.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

	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	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 제4항 에서 정하는 사항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반 영	제25조(판매가격)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 부터 제3영업일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	제25조(판매가격)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 부터 3영업일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반 영	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오기정정	제28조(환매연기)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28조(환매연기)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반 영	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	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반	제32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	제32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

영	하여야 한다. 1. 대차대조표	하여야 한다. 1. 재무상태표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반 영	제37조(수익자총회)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(이하 이 항에서 "간주의결권행사"라 한다)한 것으로 본다. 4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⑩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, 제6항, <추가>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"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"는 "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"로 본다.	제37조(수익자총회)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(이하 이 항에서 "간주의결권행사"라 한다)한 것으로 본다. 4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⑩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, 제6항, 제7항 ,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"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"는 "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"로 본다.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반 영	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2.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	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2.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제1항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반 영	제39조(보수)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	제39조(보수)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집합투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집합투

정사항 반영	<p>사업자 또는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, 변경시행일 전 까지 상호협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대상금액 :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시행일 전일까지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보수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(법률자문, 사업성평가, 금융자문 등)</p>	<p>사업자 또는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, 변경시행일 전 까지 상호협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대상금액 :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시행일 전일까지 제39조제3항에 따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보수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(법률자문, 사업성평가, 금융자문 등)</p>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<p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④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④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<p>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추가></p>	<p>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p>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기업공시식 개정사항 반영	<p>투자결정시 유의사항</p> <p>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<신설></p>	<p>투자결정시 유의사항</p> <p>1.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,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</p> <p>5.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</p>

		초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.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[요약정보]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 [요약정보]	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: 02-3770-1300	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: 02-2118-0500
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	제2부 4. 집합투자업자,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연락처 : 02-3770-1300	제2부 4. 집합투자업자,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1 37층 연락처 : 02-2118-0500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, -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*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■ 우리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 (채권)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)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○ 자산총액의 100%까지: 국채증권,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○ 자산총액의 30%까지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	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*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■ 우리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 (채권)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)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○ 자산총액의 100%까지: 국채증권,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○ 자산총액의 30%까지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

	<p>발행한 어음, 파생결합증권, 법 시행령 제 79조제2항 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), <추가></p>	<p>발행한 어음, 파생결합증권, 법 시행령 제 79조제2항 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 한 채권</p>
<p>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</p>	<p>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 : 6등급 수익률 변동성 : 0.43%</p>	<p>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 : 5등급 수익률 변동성 : 0.53%</p>
<p>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</p>	<p>제2부.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<신설></p>	<p>제2부.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2)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</p>
<p>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p>	<p>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-</p>	<p>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업데이트</p>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제 4 부 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< 신설 ></p>	<p>제 4 부 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</p>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</p>	<p>제 5부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6.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</p>	<p>제 5부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6.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</p>

	(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	(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	제 5부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	제 5부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	제 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제 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.)

<간이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	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: 02-3770-1300	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: 02-2118-0500